



국제 농업 정보(2020. 12.): 글로벌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의 의의와 향후과제¹⁾

■ **[개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²⁾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³⁾의 정상은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함.

- 한국 정부 최초의 화상회의를 통한 자유무역협정서명 사례인 이번 서명으로 무역규모, 역내총생산(GDP), 인구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 FTA가 출범한 것임.
- 근래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⁴⁾) 및 포괄적·점진적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⁵⁾)의 무역규모·인구의 전 세계비중이 2019년 현재 각각 약 14%와 7% 정도이나 RCEP은 무역규모 및 인구의 전 세계비중이 모두 약 30%를 차지하며 역내총생산(명목 GDP)도 세계비중 약 30%인 26.3조 달러에 달함
-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지난 약 8년의 협상 과정을 마무리하며, 세계 최대규모의 FTA인 RCEP의 출범은 세계 교역 및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먼저 상품의 경우 기(既)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하여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음.

-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1.7~14.7%)하였는데 자동차·부품,

1)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의 의의와 향후과제”(2020.11.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2) 여기서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말함.
 3) 인도는 출범 초기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2019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 후 협상에 복귀하지 않았음.
 4)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은 북미 3국이 기발효(1994년)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해 새롭게 추진하는 다자무역협정임.
 5) 포괄적·점진적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서 기타결(2015.10월)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2개국, TPP)이 미국이 탈퇴한 동 협정(11개국, CPTPP)으로 변경되어 발효(2018.12월)됨.



국제 농업 정보(2020. 12.): 글로벌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함.

-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세 철폐수준의 경우,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2%p 높은 관세철폐율(한국 76%, 일본 78%)을 보였음.
 -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철폐⁶⁾를 다수 활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함.
- 한편 90% 이상 수준으로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던 중국(한국 92%, 중국 91%), 호주(한국 98%, 호주 100%), 뉴질랜드(한국 98%, 뉴질랜드 100%)와는 대부분 기체결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기체결 FTA(한-베, 한-중 등)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일부 개방품목도 관세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대비 시장 개방수준이 확대됨.
 -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1995) 대비 온라인게임 등 일부를 개방하고 호주·중국·뉴질랜드는 우리와 양자 FTA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기체결 FTA 및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함.
-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유화 규범을 확보하여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됨.
-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챕터를 신규 도입하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함.
 - 특히, RCEP 참여국인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통합되고,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며, 누적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어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의 강화와 교역활성화를 도모하게 됨.

6) 초기엔 소폭 감축 후 이행 말기에는 큰 폭으로 감축하는 방식을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0. 12.): 글로벌

- **[의의와 기대]** RCEP 협정 출범의 의의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무역협정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안정화와 자유무역 확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가속화, 일본과 최초로 체결한 FTA 등으로 다양하며, 이를 통한 산업·경제적 기대효과도 발생함.
-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9년 11월에 추계한 바에 따르면,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철폐 수준이 92%로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 7,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 관세감축 외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조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산업별로 자동차·부품·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신남방지역으로의 진출이 부진하였으나 RCEP이 향후 교역 확대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농수산업의 경우 RCEP 체결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농산물을 31억 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66억 8,0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여 무역적자를 기록함.
 - 또한, RCEP 회원국 내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베트남 시장에서는 중국과, 중국·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싱가포르와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RCEP 타결 시 곡물류와 과채·채소류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임.
- 한편 원산지 규범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으로 ‘스파게티 볼’ 효과⁷⁾를 최소화하여 협정 활용 및 교역량 증가와 누적원산지 규정을 통한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발전 정도가 다양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역내에서 대부분의 원재료 및 중간재를 관세 없이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원산지 규정이 역내 국가 간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역외 국가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쉬움.
-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RCEP 참여는 장기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 가운데에서 친중국 행보로 해석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7) 이는 한 국가가 다수의 FTA를 체결할 시 접시 안에서 스파게티 가닥이 엉킨 것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과 통관 절차 등이 복잡해져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됨을 의미함.



국제 농업 정보(2020. 12.): 글로벌

- 바이든(Joe Biden) 당선자는 신규 통상협정 체결보다는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환경 및 노동 규범의 강화 없이 CPTPP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천명해 왔음.
- 미중 간 갈등은 무역 갈등을 넘어선 기술·안보·외교적 요소가 깊이 관여된 구조적 문제인만큼 미국에 의한 제2의 사드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RCEP 회원국들이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들이며, RCEP 협정의 시작이 동아시아 내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ASEAN 국가들에서 비롯되었고, 미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로 교역상대국을 다양화하여 위험을 분산할 필요성은 대다수의 회원국 간에 공통적인 점을 고려할 때, RCEP 체결이 미중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옴.
- **[향후 과제]** RCEP 서명 후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RCEP 협정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임.
 - RCEP 협정의 발효요건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것으로 60일 후 발효되며, 미비준 국가는 발효되지 않음.
- 또한, 2019년 11월 협정문 타결 시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임.
 -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 경기, 국제경쟁력이 낮은 제조업,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RCEP 협상 타결 합의를 유보한 후 결국 최종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RCEP 협정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인도가 참여할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은 0.62%, 소비자 후생효과는 68.25억 달러가 되어, 인도가 불참한 현재의 실질 GDP 증가수준(0.51%)과 소비자 후생 증가수준인 약 54억 7,600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RCEP이 미국과 중국 간 분쟁에 대한 완충재로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회원국 간 연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국의 경제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CPTPP 등 RCEP 이외의 지역 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함.
- 한편, 광역 지역무역협정은 제품기획, 디자인, 연구개발 등 상위 가치사슬에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고부가가치 생산 단계인 가치사슬 상위단계의 경쟁력



국제 농업 정보(2020. 12.): 글로벌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함.

- 특히, RCEP 회원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부문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 국가이므로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며 가치사슬 상위단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RCEP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된 FTA의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개방품목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와 교역 확대라는 관세 외 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음.

- 따라서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침체된 농·수산·임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RCEP 역내의 농·수산·임업 관련 고부가가치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